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25 발의연월일: 2025. 4. 22.

발 의 자:이성윤·김현정·민형배

박희승 • 이춘석 • 한준호

윤준병·김윤덕·이원택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이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피고용인이나 출입자의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나이만을 확인하면 되는 것인지에 더해,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으로 하여금 업소의 피고용인과 출입자의 나이뿐만 아니라 본인 여부도 함께 확인하도록 명확히 함으로 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등의 대상자의 나이 및 본 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 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이를 준수할 수 있음. 이에 반해,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구체성이 결여된측면이 있음.

따라서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29조).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나이"를 각각 "나이 및 본인 여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 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 ⑩ (생 략) (5) ~ (D) (현행과 같음)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 입 제한 등) ① -----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 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 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 -----<u>나이</u> 및 본인 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 야 하다. 여부----.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나이 및 본인 여부--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야 한다.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 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 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 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 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 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 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⑥ (생 략)

<u>나이 및 본인 여부</u>
4
<u>나이 및 본인 여부</u>
<u>나이 및 본인</u>
여부
<u>.</u>
(5) · (6) (현행과 같음)